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  
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2. 12. 22  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2월 17일  
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2년 12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3회 의회(정기회) 제7차  
위원회(92.12.22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하수과장 송인록)

- 가. 제출이유  
“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”에 의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보상금 미신청 세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- 나. 주요골자  
보상신청 기한 연장(안 제5조 제2항)  
  - 당초 : 1992년 12월 31일이 경과한 때
  - 변경 : 1993년 6월 30일이 경과한 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현기)

본 개정조례안은 1992.12.31로 규정된 보상신청 기한을 향후 6개월간 연장조치함으로써, 현재까지 미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신청기회를 확대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 타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  
개정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2년 12월 1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보상금 미신청 세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보상신청 기한 연장(안 제5조 제2항)  
  - 당초 : 1992년 12월 31일이 경과한 때
  - 변경 : 1993년 6월 30일이 경과한 때

3. 개정(안)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  
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신청은 1993년 6월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, 해외이주자, 국외출타자,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이 조례는 최초 제정공포일부터 30개월간 시한부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보상신청)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 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신청은 1992년 12월 31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, 해외이주자, 국외출타자,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보상신청)①현행과 같음</p> <p>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신청은 1993년 6월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, 해외이주자, 국외출타자,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
'93공유재산관리계획(안)심사보고서

'92. 12. 22  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2. 11. 20  
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'92. 11. 20
- 다. 상정일자 : 제13회 정기회 제7차  
위원회('92.12.22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영목)

- 가. 제출이유  
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매각대상 재산

상반기 : 마포구 대흥동 2-84대지의 4건	} 10필지
하반기 : 마포구 대흥동 12-36대지의 4건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현기)

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시 지방의회

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.

매각재산의 표시와 총면적은 대흥동 2-84번지 등 10필지 238.4㎡로서,

동 매각건은 대부분 점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수용후 소규모 잔여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관리계획으로 판단됨.

그리고 인근지역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(운동현위원) : 매각대상 10필지중 상반기에 5필지, 하반기에 5필지를 매각하는 내용인가?
- 답변(재무과장 이용목) : 그러함.

5. 토론요지

- 찬성 : 운동현, 윤정용위원  
이미 수년간 매수희망자가 점유를 하여왔고 또한 매수희망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이웃주민의 동의는 매수신청시의 전제조건인 이상 현장확인 없이 원안가결하자

- 반대 : 유남렬위원  
이웃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이루어져야 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한후 처리하자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